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명자료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2020년 2월 1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장 유원상(044-201-1531), 사무관 김일수(1538) / 제공일: 2월 11일(총 6매)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 이진곤(044-201-4055), 사무관 이종철(4059)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관 과장 엄대섭(044-201-7157), 사무관 황청순(7148)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외국인 근로자 운영 중단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아시아경제 2.1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E-9, H-2)에 대한 운영중단이나 비자 발급 잠정 중단한 사실이 없습니다.
- 2월 10일 아시아경제 5면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손 급한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 및 고용허가제(E-9, H-2)운영 중단해 농촌인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
 - 90일 단기 취업 C-4 중단, 5개월 체류 E-8비자 도입 보류
 - E-9, H-2 등 신규 비자발급 중단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

- 상기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법무부에서는 '20. 2. 6.(목) 고용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계절근로자 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 '20. 1. 1.~1. 16.까지 총 50개 지자체로부터 5,067명(어업 265명 포함)의 신청을 접수받아 전년도 불법체류 등에 따른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총 48개(어업 2개 포함) 지자체에 4,797명(어업 265명 포함)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습니다.
- 또한, '20. 2. 10.(월) 계절근로를 신청한 50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계절근로 배정결과와 감염증 예방관련 지자체 점검·준수사항을 함께 송부하였습니다.
- 계절근로 인원을 배정받은 지자체는 농·어가를 최종 확인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단기취업(C-4, 90일) 비자와 이번에 신설된 계절근로(E-8, 5개월)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도입을 중단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과 외국국적 동포의 특례고용허가제(H-2)의 신규발급도 중단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특례고용근로자(H-2 비자)**의 취업교육은 2월말까지 잠정 중단하였으나, 나머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의 고용허가 절차는 기존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H-2 취업절차)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 취업교육 → 구직등록 → 고용센터 알선 또는 자유구직 → 근로계약 후 취업
- * (E-9 취업절차) 고용주 고용센터에 고용 허가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 → 취업교육(2박3일) → 근무시작

- ① **계절근로자(C-4, E-8)** : 농·어번기 외국인 근로자를 90일(C-4) 또는 5개월(E-8)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② **고용허가제(E-9)** : 외국인 근로자를 3년간(최대 4년 10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③ **특례고용허가제(H-2)** : 18세 이상 중국·구소련권 동포에게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 가능한 제도

붙임 1. '20년도 계절근로자 신청 및 배정현황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련 계절근로 운영 주의사항. 끝.

참고1
2020년 농업분야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신청 및 배정인원

지 자 체		신청 인원	배정 인원	지 자 체		신청 인원	배정 인원
경기 (2개시, 22명)	광주시	18	18	전북 (6개 시군, 255명)	고창군	13	13
	평택시	4	4		군산시	2	2
강원 (11개 시군, 2,173명)	양구군	640	608		무주군	69	69
	양양군	2	2		익산시	30	30
	영월군	39	39		장수군	32	32
	인제군	353	353		진안군	109	109
	정선군	100	100	전남 (4개 시군, 121명)	고흥군	51	50
	철원군	238	238		나주시	13	13
	춘천시	208	208		보성군	8	8
	태백시	40	40		장흥군	50	50
	홍천군	400	400		해남군	82	미배정
	화천군	123	123	경북 (8개 시군, 765명)	문경시	10	10
	횡성군	62	62		봉화군	107	107
	평창군	102	미배정		상주시	23	23
충북 (8개 군, 1,004명)	괴산군	227	226		성주군	43	43
	단양군	177	176		영양군	412	412
	보은군	118	118		영주시	97	93
	영동군	88	88		울신군	11	11
	옥천군	40	40		의성군	70	66
	음성군	146	125	경남(20명)	창녕군	20	20
	제천군	100	100	제주 (2개 시, 80명)	제주시	67	64
	진천군	148	131		서귀포시	16	16
충남 (3개 시군 79명)	논산시	51	51	세종(13명)	세종시	13	13
	부여군	9	7	10개 시도	46개 시군	4,802명	4,532명
	청양군	21	21				

* (시도별) 강원 2,173명, 충북 1,004, 경북 765 순으로 3개시도가 87%를 차지

참고2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관련 주의사항

☞ 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위기 수준이 '경계'('20. 2. 10. 기준) 단계로, 계절근로자를 통해 감염증이 국내로 유입·확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지자체는 자체 사정을 고려하여 계절근로자 도입 시기나 도입국가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자체는 감염증 발생·전파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갖춘 후 계절근로자 초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

* 코로나 대응 관련 기관의 각종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되 계절근로 운영 특성에 맞는 조치 수립

☞ 감염증 발생·전파 방지 조치를 갖추지 못한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초청 절차 진행 금지

◆ 계절근로자 운영 특성 관련 지자체 점검·준수 사항 ◆

㉠ 지자체는 추천자(MOU 체결 지자체, 결혼이민자)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 하고, 해당 내용에 동의한 외국인에 대하여 초청 절차 진행

② 코로나 관련자*(후베이성 거주·방문자,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여권소지자, 감염 또는 의심되는 주변인이 있는자, 기침·고열 등 의심 증상 발현자 등)는 추천할 수 없음(입국 금지됨)

* 추천자는 국내지자체를 통하여 코로나 관련자에 대한 범위를 수시로 확인할 것

③ 위의 사항에 발견시 비자 수속 및 탑승이 금지되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의심 증상 발현시 격리되어 계절근로 활동 불가

④ 재외공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른 특정 건강검진 등 서류의 추가 요구를 이행하여야 하며, 코로나 의심증상이 없는 외국인일지라도 보건 안전을 위해 최종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 ㉔ 계절근로자로 활동 중인 외국인은 감염증 관련하여 지자체나 고용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미준수시 출국조치)
- ㉕ 지자체가 공항에서 계절근로자를 인솔하여 지자체 교육장으로 차량 이동시 체온측정,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비치
- ㉖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충분한 양의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작업 중 마스크 착용 필수
- ㉗ 고용주는 손세정제를 작업장과 숙소에 의무적으로 비치
- ㉘ 지자체는 ㉕,㉖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하며, 감염증 예방 관련 비용(마스트, 손세정제 등)은 **고용주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함
- ㉙ 지자체는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에게 감염증 예방 교육 실시
 - ※ 계절근로자에게는 해당 외국어로 교육실시(코로나예방 다국어 활용)
- ㉚ 고용주는 감염증 관련 지자체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미동의, 미준수시 배정금지 등 불이익 부여
- ㉛ 계절근로자에 대하여 입국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상 개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 조치 수립
- ㉜ 비상 연락망 구축(고용주 포함)
- ㉝ 관할 보건소 연계 등